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0. 9. 14.
사회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: 2010년 8월 19일
- 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0년 9월 1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회의(2010년 9월 7일)
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 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)

가. 제안이유

-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,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과 조문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정확한 법규 운용과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(목적)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” 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 로 개정(안 제1조)
- 안 제3조(기금의 재원) 제1호 중 “「경륜·경정법 시행령」 제19조 규정에 의한” 을 “「경륜·경정법 시행령」 제22조에 따른” 으로 개정(안 제3조)
- 안 제8조(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) 제3항 중 “부구청장” 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 으로,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 을 “문화체육과장” 으로, 같은 항 제1호, 제2호,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(안 제8조)
 - 1.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
 - 2.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
 - 3. 기획홍보과장

-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’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
(안 제1조·제2조·제3조·제4조·제5조·제7조·제8조·제9조·
제10조·제11조·제12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: 이남식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경륜·경정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고, 아울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·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, 안 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로,
- 안 제3조 중 “「경륜·경정법 시행령」 제19조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경륜·경정법 시행령」 제22조에 따른”으로 개정하였고,
- 안 제8조 제3항에서는 회의 운영 시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 중심의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의 직위 “부구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, 부위원장의 직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 하향 조정하였고, 위원회 구성 중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였으며,
- 기타 ‘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’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審査結課 : 原案 可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9 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8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정확한 법규운영과 위원장 직위를 하향하는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과 조문 비 일치되어 있는 부분 개정(안 제1조, 제3조제1호)
- 나. 회의 운영 시 개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중심의 신중한 검토·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직위를 하향조정하여 구성
(안 제8조제2항, 제3항)
- 다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, 「경륜·경정법 시행령」 제22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라. 기 타
 - (1) 신·구 조문대비표 : 별첨
 - (2) 입법예고 【10. 5. 19 ~ 6. 8(20일간)】 결과 : 의견 없음
 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사무 없음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”으로,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 의해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「경륜·경정법 시행령」 제19조 규정에 의한 ”을 “「경륜·경정법 시행령」 제22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매회계연도”를 “회계연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주요항목인 장·관·항의”를 “주요항목의”로, “10분의 5이하를” “10분의 5 이하로” 한다.

제7조 중 “매 회계연도”를 “회계연도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9인이내의”를 “9명 이내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항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, “제3항제2호에 따라”로, “잔임”을 “남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담당주사가”를 “담당팀장이”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
2.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
3. 기획홍보과장

⑥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9조제3호 중 “주요항목인 장·관·항의”를 “주요항목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부외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3분의 1이상”을 “3분의 1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예산의 범위내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담당주사가”를 “담당팀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 133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 1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금의 설치)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여, <u>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</u>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</p> <p>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,</p>	<p>제2조(기금의 설치)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</u>----- -----.</p> <p>②제1항에 따라 ----- -----.</p>
<p>제3조(기금의 재원) (생략)</p> <p>1.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수익금 중 「<u>경륜·경정법 시행령</u>」 제 19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</p> <p>2.(생략)</p> <p>3.기타 수익금</p>	<p>제3조(기금의 재원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----- ----- 「<u>경륜·경정법 시행령</u>」 제 22조에 따른 ---</p> <p>2.(현행과 같음)</p> <p>3.<u>그 밖의</u> ---</p>
<p>제4조(기금의 용도) (생략)</p> <p>1.(생략)</p> <p>2.(생략)</p> <p>3.(생략)</p> <p>4.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 사업이나 활동</p>	<p>제4조(기금의 용도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(현행과 같음)</p> <p>2.(현행과 같음)</p> <p>3.(현행과 같음)</p> <p>4.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(생략)</p> <p>1.(생략)</p> <p>2.(생략)</p> <p>3.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p> <p>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(이하 "구의회"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<u>주요항목인 장·관·항의</u>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5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(현행과 같음)</p> <p>2.(현행과 같음)</p> <p>3.그 밖에 ----- -----</p> <p>②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회계연도 ----- -----</p> <p>③----- 주요항목의 ----- ----- ----- 10분 의 5 이하로 ----- -----.</p>
<p>제7조(기금의 결산)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, 운용성과분석 결과 및 복식 부기회계 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기금의 결산) ----- 회계연도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8조(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)</p> <p>①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	<p>제8조(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)</p> <p>①----- ----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 ----- -----.</p> <p>②----- 9명 이내의 ----- -----.</p> <p>③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1.기획홍보과장, 문화체육과장</p> <p>2.구의회 구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</p> <p>3.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</p> <p>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⑤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⑥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임기중 사망하였을 때</p> <p>2.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</p> <p>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가 한다.</p>	<p>1.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</p> <p>2.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</p> <p>3.기획홍보과장</p> <p>④제3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제3항제2호에 따라 ----- ----- ----- 남은 ----- -----.</p> <p>⑥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⑦----- 1명 ----- 담당팀장의 -----.</p>
<p>제9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(생략)</p> <p>2.(생략)</p> <p>3.주요항목인 장·관·항의 지출금액 변경</p> <p>4.(생략)</p> <p>5.기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</p>	<p>제9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(현행과 같음)</p> <p>2.(현행과 같음)</p> <p>3.주요항목의 -----</p> <p>4.(현행과 같음)</p> <p>5.그 밖에 ----- -----회의에 부치는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회의) ①(생략) ②(생략) ③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. ④(생략) 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회의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3분의 1 이상 ----- -----. ④(현행과 같음) ⑤----- ----- 예산의 범위에서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. ②(생략)</p>	<p>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----- ----- 총괄-----. 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(생략) ②기금운용관은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가 된다. ③(생략)</p>	<p>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담당팀장이 ----- -----. ③(현행과 같음)</p>